

항공보안직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항공보안 공통 : 「경비업법」 제10조제2항 준용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 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 항공보안 공통 :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1. 심신상실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 **임용 전 병력조회 실시 후 해당사항 발생 시 전문의의 소견을 요구하거나,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수경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 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偽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용 전 가스분사기 소지 허가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안검색 :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10.1.1에 따른 항공보안 검색요원 자격 기준

1. 나이 : 만 18세 이상

2. 국적 : 대한민국

3. 건강상태

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

나. 신체요건

1) 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2) 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이상 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이상 일 것

- 3) 색맹 또는 색약(각)이 아닐 것
- 4) 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 5) 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 6)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4. 신원조사

가. 채용 전 반드시 신원조사 실시

나. 신원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5년간의 경력조회 실시

5. 현장 직무교육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